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315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3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을 기금 조성 수입항목으로 수정함 (안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).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로부터의 전입금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
3.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4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-|---|
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<u>출연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“지역개발채권“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</p> <p>3. 기금의 운용수익금</p> <p>4.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</p> 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<u>기금전출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<u>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“지역개발채권“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</u></p> <p>3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</p> <p>4. <u>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지원금</u></p> 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u>로부터의 전입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<u>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“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</u></p> <p>3. <u>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</p> <p>4. <u>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수입</u></p> |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로부터의 전입금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 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
3.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4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조정실장
2. 기금분임운용관 : 재정균형발전담당관
3. 기금출납원 : 재정균형발전담당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<u>출연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<u>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</u>(이하“지역개발채권” 이라 한다)의 발행수입</p> <p>3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</p> <p>4. <u>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지원금</u></p> <p>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<u>기금의</u>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<u>원인 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</u>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<u>로부터의 전입금</u>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</p> <p>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<u>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</u>(이하 “지역개발채권” 이라 한다) 발행으로 조성된 <u>차입금</u></p> <p>3. <u>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</p> <p>4. <u>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</u>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<u>수입</u></p> <p>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<u>기금의</u>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<u>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</u>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|